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한 숙 희*

국문요약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소년법이 개정되어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이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인하되었다. 개정 전 소년법 하에서는 대부분의 촉법소년들이 1호 또는 1호·자원보호자 처분을 받고 있으나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보호자의 보호력이 열악한 경우, 4호 수탁기관 처분이나 6, 7호 소년원송치처분을 받기도 한다.

필자는 촉법소년들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처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① 법원과 지방경찰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라 경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므로 그들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② 소년조사관에 의한 촉법소년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소년조사관은 예후가 불량한 모든 촉법소년을 조사하여 상담·교육 기능, 복지적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③ 시험관찰제도를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정식재판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소년들을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친 집중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④ 소년조사사건의 외부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⑤ 집행상황 보고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처분의 적절성이나 감호의 적절성 등의 평가와 소년의 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법원 차원의 관리, 집행이 완료된 소년에 대한 사후조치 등이 가능하게 된다. ⑥ 국선보조인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조인으로 선임된 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I. 처음에

1. 소년법의 개정

소년법은 1958. 7. 24. 법률 제489호로 제정된 후 1963. 7. 31., 1977. 12. 31. 각 개정되었다가 1988. 12. 31. 전문 개정되었다. 그 후 1995. 1. 5., 2007. 5. 17. 각 개정된 후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소년법(이하 개정 소년법이라고 한다)이 2008. 6. 22.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소년법의 주요 내용은 ① 소년법 대상 소년들의 연령 인하(제2조 및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 ② 소년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제도 도입(제17조의2 신설), ③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 및 보호처분의 기간 조정(제32조, 제32조의2 신설, 제33조), ④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도 도입(제49조의2 신설), ⑤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제49조의3 신설), ⑥ 비행 예방정책 기본 규정 신설(제67조의2 신설) 등이다.

개정 소년법의 시행으로 소년법의 적용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었다. 촉법소년의 대상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소년의 대상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각 확대되고, 범죄소년의 대상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축소된 것이다. 위와 같은 소년법 대상연령의 변화가 소년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주의 깊게 지켜 봐야 할 것이다.

2. 촉법소년의 이해

소년보호재판은 비행소년을 성인범죄자와 구별하여 범죄 사실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의 배후에 있는 반사회적인 인격과 환경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교육적·보호적 대책을 세워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는데 있다고 한다. 특히 저연령대의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획일적, 형식적인 처우를 지양하고 개개 소년에 따라 그 가능성을 찾아 처우를 개별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모두 지당한 말이고 꼭 실천되어야 할 명제이다.

필자는 소년보호재판을 하면서¹⁾ 비행소년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잘 분류한 후 각 소년에 적합한 최선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았다.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면 소년들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사과상자이론²⁾이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소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주변의 아이들도 덩달아 공범이든 방조범이든 비행에 연루되고 같이 가출하여 찔질방을 전전하면서 비행문화에 물들기 시작하고 점점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필자는 썩어가는 사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려내어 썩어가는 사과와 온전한 사과를 분리시킨 후, 썩어가는 사과는 특별관리를 통하여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나머지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 사과들도 깨끗이 닦아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년재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법원의 개입을 조기에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인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리고 순수하게 보이는 촉법소년이 어떻게 흉악한 비행을 하게 될까? 그 원인을 밝혀야 제대로 그들을 이해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재판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비행, 범죄)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나쁘고 피해자가 얼마나 상처받고 괴로워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초등학교들이 학교 길에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옥상에 있는 돌을 아래로 던지고, 때 마침 아파트 입구를 나오던 30대 가장이 꽃다운 나이의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남기고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³⁾

필자는 조디 포스터 주연의 ‘리틀 걸(The Little Girl Who Lives Down The Lane)’이라는 영화를 보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적이 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어린 조디 포스터는 아버지가 불치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아버지의 유언(세상에 맞서서 당당하게 살아라)에 따라 이를

1) 필자는 1999. 3. 1.부터 1999. 10. 24.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6. 8. 21.부터 2008. 2. 20.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각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였다.

2) 사과 상자에 썩어가는 사과가 1개라도 들어가면 그 사과는 물론 옆에 있는 사과까지 오염되어 썩기 시작하고 조만간 그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사과가 썩게 된다는 이론

3) 필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사건으로 신문에서 기사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숨기고 학교에도 가지 않고 홀로 집에서 공부하면서 살고 있다. 이혼한 어머니가 찾아오지만 아버지가 주신 청산가리로 어머니를 독살하여 지하실에 시체를 숨기고 추행전력이 있는 임대인의 아들마저 청산가리로 독살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는다. 그 영화의 포스터 카피 일부를 소개한다.

“She was only a little girl.

She lived in great big house ...all alone.

Where is her mother? Where is her father? Where are all the people who went to visit her? What is her unspeakable secret?”

위 두 사례는 촉법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원인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대답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촉법소년들에 대한 이해 및 소년재판장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개정 소년법이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춤에 따라 가정법원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를 필자가 실무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⁴⁾

II. 촉법소년 연령인하의 찬반 논거

1. 촉법소년 연령 인하에 대한 공식적인 개정이유

청소년의 성숙 정도,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 만 19세는 대학생인 점 등에 비추어 소년법의 적용 상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고, 소년법 연령이 낮아질 뿐 아니라 범행내용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하한 연령을 낮출 필요

4) 이 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8. 5. 23. ‘개정 소년법과 소년사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춘계 형사정책세미나에서, 소년보호사건재판을 담당하였던 실무가의 입장에서,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실무 및 개정 소년법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에 관하여 그동안 가정법원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들을 취합 정리한 후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인 것으로서 순수한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가 있다.

이에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춘다.

따라서 만 19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고, 현재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아니하는 만 10세와 만 11세의 소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교화·선도 등이 가능하게 된다.

2. 연령인하 찬성론자의 논거

연령인하 찬성론자들은 ① 일반적으로 초발비행의 시기가 빠른 소년일수록 비행이 상습화될 위험성이 높은 점, ② 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발육의 정도가 과거보다 더 빨라졌고, 12세 미만자의 요보호성을 인정할 만한 소년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 점, ③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비행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3. 연령인하 반대론자의 논거

연령인하 반대론자들은 ①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가 초발비행자에 대한 조기대응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점, ② 소년범상 보호처분의 확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③ 12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낙인효과를 가중시키는 사법기관에 의한 개입보다는 복지행정형 개입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4. 개정 소년법의 문제점

개인적으로 볼 때 개정 소년법은 촉법소년 등의 하한 연령만 인하하였을 뿐 촉법소년 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앞으로 소년보호재판을 하면서 고민이 많아지게 되었다.

일본은 촉법소년 등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의 조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도도부현지사, 아동상담소장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⁵⁾ 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양호시설 송치를 인정하고 있다. 위 각 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과 가정환경 기타 환경상의 이유로 인해 생활지도 등을 요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입소시키지 않고 보호자의 슬하에 둔 채 시설에 다니게 하여 개개의 아동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도를 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라고 한다. 위 각 시설은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처우를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적인 분위기 하에서의 개방처우라는 특색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32조 1항 4호 처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4호 처분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곳들이 재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그 수도 적고 나이 어린 촉법소년 등을 맡아 보호할 만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부족한 저 연령대 아동과 관련하여 그들의 신병을 어떻게 할지, 시설 내 처우를 하게 된다면 어느 곳이 적합할지, 어떤 처분이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인지 등 문제가 많다.

그런데, 개정 소년법의 경우는 물론 세계적인 소년사범의 추세가 미국의 국친사상⁶⁾을 바탕으로 비공개·비요식·직권주의에 의한 소년심판절차를 통하여 소년에게 보호와 교육을 하겠다는 이념이 후퇴하고, 소년에 대하여도 성인범죄에 대한 형사사범이념을 확대하여 적용시키는 것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07. 6. 1. 공포된 일본의 개정 소년법은 ‘흉악한 촉법사건에 대한 원칙적 가정재판소 송치와 14세 미만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와 같이 촉법소년에 대한 처리를 엄격히 하는 등 사회방위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 최근의 미국 역시 소년에 대한 치료, 교화 중심의 전통적인 사법시스템이 소년범죄를 감소시키는데 실패하였다고 인식하고 소년법원의 관할을 축소하고 형사법원에 이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⁷⁾

5) 김행순, “일본의 소년보호재판제도에 관한 고찰”, 재판자료 111집(하) 89쪽 이하 참조

6)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적절한 보호·교육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소년에 대한 보호·교육을 실시한다는 사상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특히 촉법소년들의 경우에는...

Ⅲ. 현 실무상 촉법소년 처우의 종별 및 내용

1. 심리불개시결정(소년법 19조)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형식적 심리불개시)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실질적 심리불개시)에는 심리불개시결정을 한다.⁸⁾ 심리를 개시할 수 없는 사유로는 심리조건⁹⁾의 부존재, 비행사실의 부존재, 소년이 심리능력이 결여되었거나 소재불명인 경우로서 심리가 사실상 불능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란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모두 상당하지 않고, 소년부 판사에 의한 직접심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별건에 의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거나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 등을 말한다.

2. 불처분(소년법 29조)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 불처분결정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의 결과 ①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비행사실은 인정되나 비행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비행이고 피해자

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 제Ⅲ부 대안의 모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68쪽, 119쪽 이하 참조

8) 심리불개시 결정은 심리개시 전에 하는 것이지만 이미 심리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심리기일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그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소년심판규칙 22조),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기도 한다.

9) ① 소년의 생존, ②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칠 것, ③ 관할권, ④ 송치통고 등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없을 것, ⑤ 당해사건에 관하여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효과 미치지 않을 것, ⑥ 소년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일 것 등

의 용서를 받았으며 보호자의 보호력이 강하여 재비행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미 다른 보호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등으로 별도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주로 선택하고 있다.

3. 1호 처분(소년법 32조 1항 1호)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인바, 저연령의 초범이고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처분결정이다.

보호자 위탁과 함께 자원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비행의 내용 및 요보호성은 1호 처분과 비슷하나, 보호자의 보호력이 취약한 경우(가정의 결손, 보호자와의 갈등 등) 또는 가정은 원만하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있는 제3의 조연자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선택하고 있다.

4. 2호, 3호 처분(소년법 32조 1항 2호, 3호)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으로서 2호 처분은 6개월의 단기보호관찰을, 3호 처분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을 받는 것인데, 보호자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1호 처분과 병과하고 있다.

보호관찰처분은 보통 1호 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에 선택하는데 소년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도 한다.

5. 4호 수탁기관 처분(소년법 32조 1항 4호)

4호 수탁기관 처분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다.

4호 처분은 일종의 시설 내 처우이므로 기본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력이 취약한 경우에 선택하고 있다. 주로 보호자의 보호력이 취약하거나 비행

성이 상당 정도 심화되어 있어 재비행의 위험성이 큰 경우, 이미 2, 3호 처분을 받았으나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재비행을 하여 보호관찰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년원송치 처분이 가능하나 소년원 내의 수용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연령 소년 또는 심리적으로 취약하여 온정적인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한다.

6. 5호 처분(소년법 32조 1항 5호)

소년을 병원 또는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으로서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과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처분이다.

비행의 내용보다는 보호자의 보호력과 소년의 정신건강상태에 따라 5호 처분이 선택되는데 5호 처분의 선택을 위해 소년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능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7. 6, 7호 처분(소년법 32조 1항 6호, 7호)

소년원송치 처분으로 6호 처분은 6월 이내의 단기소년원, 7호 처분은 장기소년원 송치를 말한다. 소년원송치 처분은 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므로, 보호력이 취약하고, 비행성이 심화되었으며, 사회내의 처우로는 개선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선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미 보호관찰을 수회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보호관찰을 통한 성행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하게 되며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비행의 내용이 중하고 보호력이 취약하며 이미 4호 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하고 있다.

8. 특별준수사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32조 3항에 따라 법원은 소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각 소년의 특성에 따

른 특별준수사항을 적절히 활용하여 소년의 환경의 개선과 성행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주로 하고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는 야간, 가출 중의 비행 등에 대한 야간외출제한명령이 있다. 또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특별준수사항의 형식으로 보호관찰소에 실시하는 심리치료프로그램 참여를 명하거나, 보호자의 보호력이 있으나 소년의 거부로 정신과적 치료를 못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치료기관을 지정하여 치료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의 형식으로 명하기도 한다.

IV. 촉법소년 연령인하와 가정법원의 역할강화

1. 법원과 지방경찰청과의 협력체제 구축

가. 서울가정법원 현황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관리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 관련 유관기관은 별지 1.과 같다.

서울가정법원은 1년에 2회(전반기, 후반기) 서울시내 각 보호관찰소장들과는 보호관찰협의회를, 서울가정법원 4호 수탁기관장들과는 수탁기관협의회를 각 개최하여 서로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비행소년처우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년에 1회 이상 유관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시설 및 기관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개정 소년법 시행과 관련하여 다양화된 보호처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 등 소년보호 집행관련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년보호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예규를 제정 중에 있다.

그런데 촉법소년 등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과의 공식적인

협의자리나 의사통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필자는 소년보호재판을 하면서 각 중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서 촉법소년들과 관련한 비행소식을 접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직접 담당 경찰관과 연락하여 사건의 개요나 처리방향 등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또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된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신병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사적인 접촉을 통해 일처리를 하였으나 여러모로 불편하고 1회성으로 그치게 되는 등 한계를 절감하였다.

나. 업무협의회의 설치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 있으므로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일선 경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경찰청 소년업무처리 규칙 38조, 41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사 후 범 죄소년 및 촉법소년의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전후의 상황, 기타 비행 사실 및 비행의 정황을 입증하는 제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2., 3. 과 같이 소년범환경조사서 및 소년의 비행성 예측자료표를 작성·첨부하여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 환경조사서와 비행성 예측자료표는 경찰관이 촉법소년들과 그 보호자들을 일선에서 직접 면접하고 조사하면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작성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들의 비행성향 및 환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소년범환경조사서 및 비행성예측자료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촉법소년의 송치 외에도 소재불명의 비행소년들에 대한 소재탐지나 동행영장 집행 등 소년보호사건에서 경찰관이 담당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필자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추진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소년업무 담당자들과 의사소통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년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경찰관과의 의견교류 및 업무협조를 위한 자리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교류의 필요성도 있다.

한편, 현행 소년법은 물론 개정 소년법에서도 촉범소년이나 우범소년에 대한 경찰관의 구체적인 조사절차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¹⁰⁾ 다만, 경찰청은 소년을 과학적으로 선도·보호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며,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소년업무 처리의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소년업무처리규칙을 두고 있다. 위 규칙 7조에 의하면 소년경찰활동을 함에 있어 ① 건전육성의 정신, ② 소년의 특성이해, ③ 처우의 개별화, 과학화, ④ 비밀의 보장, ⑤ 관계자의 존경과 신뢰의 획득을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과 지방경찰청과의 협력체제가 구축되면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조사 및 신병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사전·사후 통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가사조사관의 조사활동 확대

가사조사관은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사실의 진상을 파악하여 가사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고 소년비행에 대한 사회적 조사를 담당하는 독립된 공무원이다. 2008년 3월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전문직 조사관 15명, 일반직 조사관 11명으로 그 중 소년보호조사관은 3명인데 모두 인간관계 제과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유자격자로 능력이 탁월하고 소명의식이 투철하여 소년보호재판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촉범소년의 연령이 인하됨에 따라 촉범소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이 어린 소년들을 재판에서의 정식처리절차에서 심리하는 것

10) 일본의 2007. 6. 1. 공포된 개정 소년법은 제6조의2(경찰관 등의 조사), 제6조의3(조사에 있어서 보조인), 제6조의4(호출, 질문, 보고의 요구), 제6조의5(압수, 수색, 검증, 감정위탁) 등을 추가하여 촉범소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권한을 정비하였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은 객관적인 사정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촉범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촉범소년의 수사는 오로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그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앞(주5)의 책 121쪽 이하 참조

은 소년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년조사관은 예후가 불량한 모든 촉법소년을 조사하여 상담·교육 기능,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case worker적 기능, 복지적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 경찰에는 검찰의 기소유예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와 같은 다이버전 권한이 없기 때문에 1회성 비행이거나 모방비행, 경미한 방조범 등 모든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있다. 따라서 소년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 접수 또는 직후 절차 선별을 통하여 재판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정식심리절차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국시켜 소년 및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소년조사관은 출장조사, 심리검사, 조사면접과정에서의 상담, 조언, 부모교육, 지역사회 외부기관과의 연락·협력, 소년에 대한 시험관찰제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보호소년의 심리,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을 파악한 후 그들이 최선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능력 있는 소년조사관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자가 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정법원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한도 많고 눈물도 많은 서민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대한 투자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고, 그들의 애환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미래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 시험관찰의 시행

시험관찰은 소년보호사건 재판부와 소년분류심사원 및 유관 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최종처분 전에 일정기간 보호소년의 특성에 맞는 조사·교육·상담을 거쳐 그 결과를 최종처분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시험관찰의 시행으로 얻은 장기간에 걸친 집중 상담조사 결과를 법원의 최종 심리에 반영함으로써 충실한 소년보호재판이 구현될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 있어 보호소년에 대한 상담 및 조사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비행소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전 예방적 초기 개입전략을 마련하고 탈비행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상담 및 조사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비행소년이 비행초기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비행을 방지하고 특히 수용기관에 대한 부담감으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방치, 초기 대응이 소홀했던 촉법소년 등 중간처우대상 소년에 대한 보호력을 강화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의 누범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과정에 지역사회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교정을 실현하고, 비행소년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도 있다.

이에, 이계경 의원 등이 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에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하기 전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법원의 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교육, 기타 관련 상담기관과의 연계 등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① 법무부는 법원 조사관이 상담과 교육 등에 관한 권한까지 행사할 경우 사실상의 보호관찰을 법원 조사관이 하게 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② 한국형사법학회에서는 법원 조사관의 상담과 교육 등에 관한 업무와 수장명령과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이중처벌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각 반대함에 따라 시험관찰제도가 개정 소년법에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무에서 볼 때, 특히 정식재판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10세, 11세 소년의 경우에는 시험관찰제도가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시험관찰”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실제로 운영한 사례를 검토하여 앞으로 그 실시여부 및 대상소년의 범위 등에 대하여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가. 광주가정지원 장기상담조사제도 운영¹¹⁾

2006년 7월경부터 광주소년분류심사원과 협의 하에 소년법 18조 1항 1호 및 4항에 근거한 임시조치의 한 방법으로서 장기상담조사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2006년의 상담조사 대상자 165명 중 148명의 재비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담·교육 이수자 131명 중 27명(20.6%)이, 교육을 받지

11) 민혜영 광주 가정지원 소년조사관이 작성한 ‘광주가정지원 장기상담조사제도’를 주로 참고하였다.

않거나 미 수료한 17명중 12명(70.6%)이 재비행하였다. 상담·교육 수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소년 6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실태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42명(64.6%)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을 중단한 7명(10.8%)도 취업, 학원수강 등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이들은 상담교육이 자기이해 및 반성계기, 책임감, 준법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었으며, 학교적응, 교우·가족관계 개선 등에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1) 법 원

법원은 장기상담조사 대상자를 선별하여, 임시조치로서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하면서, 보호자에게 1 내지 3개월간 보호소년으로 하여금 소년분류심사원이 주관하여 소년감호의 필요상 시행하는 조사 및 상담에 응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장기상담조사 기간 종료 후에는 소년분류심사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상담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최종처분을 결정하였다.

2) 광주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대상소년에 대하여 1~3일 동안 분류심사원에 출석하게 하여 신상관계, 생활환경 등 기초조사 및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조사 시간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취지 및 협조사항, 준수사항(가출·외박금지 등) 등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후 비행유형, 생활환경,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상담·교육프로그램 및 의뢰기관, 단체, 개인 등을 선정, 연계하고 대상소년 및 보호자 등에게는 주 1회 이상 상담·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 대상소년에 대해서는 현 지방문, 전화 등을 활용, 교우관계, 야간 외출, 외박 등 생활태도를 월 2회 이상 집중 관찰하고 위험요인과의 접촉을 차단(개입), 안정된 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재비행을 방지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등 상담조사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법원에 통보하였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시험관찰 종료 후 의뢰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평가서 등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초조사 및 관찰·조정 결과를 종합,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리 기일 전 법원에 송부하였다.

3) 프로그램 의뢰기관

의뢰받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하면서 대상자의 참여태도, 행동변화 등 특이사항을 누가기록하고 프로그램 종료시 전반적인 평가사항과 교육·상담일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통지하였다.

나. 성공적인 시험관찰 운영방안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입증된 협력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소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에 태만하고 불출석 등 상담조사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추가 비행 등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 낼 수 있도록 부모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협력기관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상담조사기간 중 발생한 대상자의 신상변동(가출, 학업중단, 거주지 변동, 임신 등), 교육 불참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전문가 진단의 적극적 활용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시험관찰이 개정 소년법에서 정식으로 도입되지 못함에 따라 적극적·공개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대신 소년법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가의 진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에 대한 획일적, 형식적인 처우를 지양하고, 개개 소년별로 성행교정 가능성을 찾아 처우를 개별화하는 것이 소년보호절차의 핵심이

라고 할 때 전문가의 진단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그 소년에 적합한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동안에는 서울가정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 조사관이 청소년상담실, 정신보건센터 등에 개별적으로 의뢰하였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 진단의 실시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자격, 위촉의 시기 등 구체적 절차를 예규로 제정 중에 있다.

필자는 보호처분 결정을 함에 있어, 각 소년의 특성을 잘 파악한 후 시험관찰과 전문가 진단을 적절히 구분하여 활용한다면 보호소년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소년조사사건 외부기관 연계시스템 구축

가. 가정법원의 외부기관 활용 가능성

소년조사사건의 외부기관 연계는 시험관찰, 전문가 진단과 같은 제도들을 잘 시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된 것이다. 외부기관을 이용한 시험관찰을 통하여 보호소년의 성행과 상황을 파악하고 보호소년이 사회에 내보내졌을 때의 상황을 살펴 보호처분 결정에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의 개인 상황에 맞도록 보호처분 전에 보호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거나 연결하여 보호처분 시 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명할 수 있다. 또 1호 처분을 한 때에도 전문적인 상담이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결활동을 통하여 보호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서울가정법원의 외부기관 활용상황

서울가정법원은 그동안 소년조사관을 중심으로 조사활동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들에게 개인적으로 관련기관에 부탁하여 연계활동을 하여왔는데 관련 예산이 전혀 없고 법원과 청소년 관련 기관 사이에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려웠다. 서울시 소재 청

소년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기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청소년 상담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인 교육청 산하 청소년상담실,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서울시 청소년상담실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관련 기관들 역시 법원과의 협력체계를 요청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정법원이 중심이 되어 서울시,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업무를 맡고 있는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 10세의 촉법소년·우범소년 때부터 개입을 시작하여 그들의 비행과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연계기관 구축 방안¹²⁾

1) 가정법원이 직접 외부기관연계를 구축하는 방법

가정법원이 직접 상담실, 사회복지관을 선정하여 현재 4호 수탁기관과 같은 복지기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이다.

가정법원이 외부기관을 직접 선정하면, ① 법원이 주도적으로 기관들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② 보호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보호소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줄 수 있으며, ③ 법원이 단순한 사법적 분쟁해결기관이 아니라 사법복지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④ 미국과 같이 법원선 의주의에 기초가 될 수 있고, 현재 경찰, 검찰에서 산발적이고, 단기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에 비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외부기관을 직접 선정하면, ① 법원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막중해지는 점, ② 보호소년에 대한 서비스지원이 부실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등 냉정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직원 등의 인력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인력수급상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기관관리를 위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12) 김재연 서울가정법원 소년조사관이 작성한 ‘소년조사사건 외부기관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서’를 주로 참고하였다.

는 문제점이 있다.

2) 가정법원과 서울시가 함께 외부기관연계를 구축하는 방법

가정법원이 서울시와 공식적으로 협력체계를 이루어 일하는 방법으로 법원은 서울시에서 추천해주는 기관을 활용하되 서울시가 재원과 관리, 감독을 맡는 방법이다.

서울시와 협력체계의 장점은, ① 법원이 서울시를 통하여 기관에 대한 상태파악, 보호소년을 받을 수 있는 명 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우수기관을 추천받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예상되는 점, ② 보호소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물론이고, 예산안까지 받아볼 수 있는 점, ③ 서울시의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는 별다른 재원마련이 필요 없는 점, ④ 기관에 대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각 구에서 맡기 때문에 법원의 기관관리가 쉬워진다는 점 등이 있다.

단점으로는, ① 가정법원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가정법원과 서울시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 안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는 점, ② 사법부 소속의 가정법원과 행정부 소속의 서울시가 일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③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으로 가정법원에 부담으로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가정법원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외부기관 연계를 구축하는 방법

가정법원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공식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는 방법으로 가정법원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연관된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장점으로는, ① 비행소년 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생각되고, ②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합하여 보호소년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①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 상담실이 많지 않고 상담실과의 연

계에만 국한되어 복지관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점, ② 서울시는 서울시, 각 구에서 복지관 담당자, 청소년상담실담당자, 서울시 교육청 상담실 담당자가 각각 있기 때문에 관리·파악이 쉽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큰 부처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관리할 인적자원이 배치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③ 가정법원이 주도적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 소 결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였던 필자로서는 위 세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잘 헤아려서 가정법원이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보호소년에게도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법원이 중심이 되어 서울시,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자원의 활용도 높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특히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문가 진단 등과 관련하여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서울시나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 관련기관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가정법원이 어떤 기관과 손을 잡고 외부기관연계를 구축하든지 조만간 결론을 내어 우선 실시하고 수정을 거치는 것이 촉법소년들을 위한 길이라고 할 것이다.

5. 집행상황보고의 적극적 실시

소년법 36조 1항에 의하면, 소년부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법 32조 1항 1호, 4호, 5호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필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하면서 보호처분이 적절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간접적으로 관련 집행시설을 감독하고자 소년조사관들로 하여금 집행상황

보고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묶어 “집행상황 조사보고”라는 문건을 작성도록 하였던 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 1호·자원보호자 처분

자원보호자 제도는 1985년경 소년부 판사들이 비행습벽이 고착되지 않아 교정 가능성이 큰 소년들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능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가려내어 성실한 자원시민에게 맡김으로써 1호 처분의 실효성을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1호·자원보호자 처분에 대한 집행상황 보고는 보호소년이나 자원보호자 양측 모두를 위한 처분의 적절성이나 감호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1호·자원보호자 처분은 주로 촉법소년 등을 대상으로 처분하고 있으므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처럼 멘터(자원보호자)와 멘티(보호소년)로 구성된 일대일 결연관계를 형성시키도록 하고, 자원보호자를 도와서 개별 프로그램의 계획 및 내용 구성 과정에 참여하고, 수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 4호 처분

4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위 시설을 통상 4호 처분 수탁기관이라고 부른다. 4호 수탁기관은 법원장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데 시설 및 운영실태가 부적당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필자가 근무하기 전에는 기관 측의 보호처분 변경과 같은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보호소년의 감호생활에 대한 법원 차원의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만기로 퇴소하는 소년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는지, 돌아가면 재범의 가능성이 큰 환경에 노출된 채 생활하여야 하는 소년에 대한 조사 및 관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집행상황 보고를 통하여 소년의 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관리와 집행 후 사회복귀에 어려

움이 관찰되는 경우 기관에서의 생활을 연장한다든지 타 기관으로의 연계를 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조치는 소년의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가정환경이 열악한 촉법소년의 경우 4호 수탁기관에 대한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법원의 관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소년조사관에 의한 집행상황조사보고가 유용할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6. 국선보조인의 적극적 활용

현행 소년보호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의 국선변호인과 같은 제도가 없어 특히 신병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어 있는 소년이나 정신적·육체적 미성숙으로 소년보호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소년 등의 인권보장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다행히 개정 소년법 17조의2는 소년보호사건에도 국선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임해야 하고,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원행정처는 개정 소년법에서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착안하여 법률전문가 외에 소년 사건 전문가 그룹도 보조인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국선보조인에 관하여 소년심판규칙을 개정하여 19조의2 1항 1호는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중인 사범연수생 등 법률전문가, 2호는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전문가 그룹으로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등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국선보조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준하여 ‘국선보조인예정자명부’를 1호 그룹(법률전문가 명부), 2호 그룹(정신·심리전문가 등 명부)으로 별도로 작성하고, 2호 그룹은 ‘12세 미만 소년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선정하고, 1호 그룹은 그 밖의 경우에 선정하도록 소년보호절차에관한예규를 제정 중에 있다. 소년부 판사는 위 국선보조인예정자 명부가 작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부의

기재에 따라 국선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국선보조인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사선보조인이 했던 역할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되나, 무조건 사회 내 처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신·심리 전문가의 경우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년을 안정시키고 소년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소년에게 적합한 보호처분을 심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선보조인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

V. 마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화·복잡화와 함께 소년비행이 증가하는 한편, 저연령대 소년들이 비행에 가담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개정 소년법은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하한 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인하하였다.

개정 전 소년법 하에서는 대부분의 촉법소년들이 1호 또는 1호·자원보호자 처분을 받고 있으나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보호자의 보호력이 열악한 경우, 4호 수탁기관 처분이나 6, 7호 소년원송치처분을 받기도 한다.

필자는 촉법소년들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처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① 법원과 지방경찰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라 경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므로 그들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② 소년조사관에 의한 촉법소년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소년조사관은 예후가 불량한 모든 촉법소년을 조사하여 상담·교육 기능, 복지적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③ 시험관찰제도를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정식재판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소년들을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친 집중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원의 최종 심리에 반영함으로써 충실한 소년보호재판을 구현할 수 있다. 더불어 전문가의 진단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

다. ④ 소년조사사건의 외부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중심이 되어 서울시,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 촉법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사후관리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⑤ 집행상황 보고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처분의 적절성이나 감호의 적절성 등의 평가와 소년의 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법원 차원의 관리, 집행이 완료된 소년에 대한 사후조치 등이 가능하게 된다. ⑥ 국선보조인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조인으로 선임된 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필자는 2005년부터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으로 4년째 근무하고 있고 그 이전에도 약 3년간 가사사건을 담당하였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가족관계는 밀접하고 계속적이기 때문에 가족 내의 문제도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게 되고, 가족 구성원의 범죄나 비행, 이혼, 실업 등의 문제가 곧바로 가족의 인간관계의 위기와 파탄으로 연결되어 모든 가족 구성원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특히 소년 비행의 이면에는 부부의 불화가 있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소년 비행의 문제를 단순히 소년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¹³⁾

필자가 담당한 촉법소년 중 1명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오락실에서 돈을 훔치는 등 비행을 시작하여 가출을 수시로 하고 나중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는 일을 다반사로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내 심정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었다면 집을 나가지 않고 나쁜 짓을 안했을 것 같다. 부모님은 나를 착하게만 대해 주었지 이해해 주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때리셨다. 정말 서운하고 화가 났다. 그 때 부모님으로부터 “집이야무리 가난해도 네가 집의 희망이니까 나쁜 짓을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13) 2003. 10. 1.부터 2004. 9. 30.까지 서울송파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에 입건된 청소년 174명(남 154명, 여 20명)에 대하여 범죄심리사가 참여하여 비행촉발요인조사 및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소년의 비행성 및 재범위험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소년 중 61명(35.1%)이 결손이혼(부모이혼, 별거, 가출)을 경험하고 16명(9.2%)은 보호자가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소년 중 54명(31.1%)이 가정불화의 경험을 겪었으며 39명(22.4%)은 보호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국(2005), 소년범 다이버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참여 사례분석집 24쪽 이하.

해서 훌륭하게, 가난하게 살지 말고 성공하고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주변의 아이들이 가난하다고 놀렸고, 가난한 것이 짜증나고 싫어졌다. 가난하니까 학교를 다니기도 싫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급식비 무료 신청서’를 본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기도 하였다.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고 잘 보이고 싶어 착하게 대해 주고 싶었는데 가난하다고 놀린 아이들이 짜증나서 싸움을 많이 하였다’고 털어 놓기도 하였다.

위 소년의 말에서 촉법소년보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 법원실무제요 제2판(소년·비송편), 법원행정처(2000)
- 소년법, 한국소년법학회편 세창출판사(2006)
- 소년법, 澤登俊雄 지음, 윤용규·최종식 옮김, 강원대학교 출판부(2007)
- 21세기 소년사범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 제Ⅲ부 대안의 모색,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7)
- 청소년 비행예방에 관한 기본규정 신설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보호국(2006)
- 소년법 다이버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참여 사례분석집, 경찰청(2005)
- 김상규, 가정법원의 장기적 발전방안 -인적, 물적 구성을 중심으로-, 실무연구 X, 서울가정법원 법관가사재판실무연구회.
- 김은영, 제1호 자원보호자 처분의 집행상황조사 실시 현황 및 개선방안
- 김재연, 소년조사사건 외부기관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서
- 김행순, 일본의 소년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재판자료 111집(하), 법원도서관
- 민혜영, 광주가정지원 장기상담조사제도
- 심은지, 제4호 소년보호처분 집행상황조사 실시 현황 및 개선방안
- 원혜옥, 법무부 소년법개정안의 개요
- 이옥형, 소년보호재판에서 처우의 선택, 가사재판연구 I, 서울가정법원가사재판연구회
- 사법부 코트넷 종합법률정보 법령편

88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통권 제74호, 2008 · 여름호)

The Roles and Tasks of Family Courts under Lowering the Age of Law-intruding Juveniles

Han, Suk-Hee*

The 2007 amendments to the Juvenile Act lowered the age with which the law-intruding juveniles can be criminalized from twelve to ten.

Considering these changes, I suggest that

1. A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provincial police agencies and courts.
2. The inspections to the law-intruding juveniles should be enhanced.
3. The tentative probation, which is an intermediate disposition before the final one, should be selectively ordered.
4. A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 courts and other institutions providing the services for the law-intruding juveniles, so as to prevent juveniles from delinquencies and crimes effectively.
5. A constant reporting system relating to the dispositions, cares and custodies to the law-intruding juveniles should be established.
6.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hould be used more actively.

주제어 : 소년법, 촉법소년, 소년조사관, 시험관찰, 국선보조인

Keywords : Juvenile Act, law-intruding juveniles, juvenile inspector, tentative probation, court-appointed assistant

투고일 2008.5.19. / 심사일 2008.5.30 / 게재확정일자 2008.6.16.(월)

* Senior Judge, Seoul Family Scout.

1. 소년보호사건 보호기관 총괄표

2008. 4. 30.

보 호 기 관		전화번호 / FAX	소 재 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031) 451 - 2683-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70
4 호 기 관	효광교호직업보도원(김정환)	(042) 271 - 7053	대전시 동구 낭월동 153 - 6
	나사로 청소년의집 (최영재) (여자전담)	(031) 867 - 6464	양주시 남면 매곡리 410
	청소년복지원“아들의집”(김광호)	(031) 941 - 8906	파주시 조리면 장곡리 205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조희준)	832 - 5026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929 - 1
	로템청소년학교(김대복)	(043) 651 - 7732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230-1
	해뜨는 마을(박수일)	(031) 534 - 7566	포천시 관인면 중리 615번지
	마자렐로센터(이정숙)(여자전담)	832-5796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253-242
5 호 기 관	백상창 신경정신과의원	2696 - 1583, 601-1583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 - 572
	동 산 의 원	744 - 4568	서울 종로구 이화동 197
	학교법인)건국대학교병원	2030 - 5400, 7121-5	서울 광진구 화양동 4-12
	지방공사 경기도의정부의료원	(031) 828 - 5162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
	국립서울병원	2204 - 0122	서울 광진구 중곡3동 30-1
6 · 7 호 기 관	대덕소년원부속의원	042 - 283- 0948	대전시 동구 비선길 41
	고봉정보통신중 · 고등학교 (서울 소년원)	(031) - 455 - 6111 - 3	의왕시 고천동 430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안양소년원)	(031) 473 - 3781	안양시 만안구 삼성산길 100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207명)		530 - 2524	서울가정법원 468호

2. 소년범 환경조사서						
인사적항	등록기준지	서울 양천구 00동 1192-19.				
	주소	서울 노원구 월계동 480. 00아파트 000-000호				
	성명	김 0 0	성별	남		
	연령	만13세	주민등록번호	940000-0000000		
	직업	월계중학교 2학년생	연락처	010-0000-0000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직업 및 수입	자산	비고
	부	김00	68년생			
	모	조00	70년생			
	동생	김00	97년생			
성장과정	성장과정	학력·경력		성격·소행 변화		
	유아기(0~5)					
	아동기(6~13)					
	소년기(14~19)	월계중 2학년 재학				
교우관계	성명	연령	직업	주소		기타
	박 0 0	만14세	학생	서월 양천구 신월동		
세평						
개선요유무						
기타						
2008 . 4 . 21 . 조사자 : 서울강서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사법경찰리 경장 0 0 0						

3. 비행성에측자료표									
인 적 사 항	본 직	서울 양천구 신정동 000-00.							
	주 소	서울 노원구 월계동 780. 00아파트 000-000호							
	직 업	학생	성 명	박00	성 별	남			
	생년월일	94. 00. 00.		주민등록번호		940000-0000000			
보호자주소		상 동				성 명	이00		
사 회 행 목 예 측 조 사	조사대상	조 사 내 용				평 점	해당표시		
		부 또는 모				0	✓		
	생계담당자	기 타				6			
		유				6			
	가정결손	무				0	✓		
		필				0	✓		
	의무교육	미필(불취학, 중퇴)				9			
		유				9			
	장기결석 1주 이상	무				0	✓		
		교우관계	친한 친구들 중에 ①직업없이 무위도식 하는 친구 유, 무 ②경찰에 단속되었던 친구 유, 무			유	0개	0	✓
	1개						5		
	2개						8		
	가출경험	무				0	✓		
						0			
		유	2회 이하			3			
	3회 이상			8					
	조발비행 (14세 미만)	무				0	✓		
						0			
		유	우범 행위			13			
	촉법 행위			16					
종합판정법	항목점수 0-11		비행위험성 낮다		항목점수				
	항목점수 12-20		비행위험성 약간높다		0				
	항목점수 21-29		비행위험성 높다		평가				
	항목점수 30이상		비행위험성 아주높다		낮다				
판정에 따른 처분 의견	구공판				소년부송치				
	구약식				기소유예				
작 성 자	직 위	경장		성 명	전00				
검사확인	성 명			타 당		부 당			